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17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88	조 국의원	2024. 8. 13.	2024. 11. 15.
	2203220	임종득의원	2024. 8. 27.	2024. 11. 15.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4. 11. 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2024. 11. 28.)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 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제54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아 개 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현행과 같음) 퇴역을 원하는 사람

-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3. 전상 · 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 람

제42조 (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제42조 (예비역 편입) ① 현역에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 입한다.

- 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 에 편입한다.
 -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 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 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 역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 된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 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 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의결 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 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
	<u>다.</u>
<u>⑥</u> (생 략)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